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22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2. 3. 2  
제안자 : 유남열의원외6인

## 1. 주 문

1. 결산검사위원 : 영등포구의회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
2. 선임방법
  - 가. 의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 3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
  - 나.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.

## 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은 우리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 1인 및 공인회계사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.

## 3. 관련법규

- 가. 지방자치법 제125조
- 나.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
- 다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·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4조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2002. 3. 23.  
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3월 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2년 3월 5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8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2. 3. 11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정진)

- 가. 개정이유
  - 국민기초생활보장·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인력 조기배치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